<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5.16.

하나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펀드코드 : C6043]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주식(신주 및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 및 공모주, 상장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하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으로 제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구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1) 주식에의 투자 – 벤처기업 상장주 및 벤처기업신주(코스닥 · 코넥스 상장기업) 등

-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벤처기업 코스닥·코넥스 공모주 및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 코스닥·코넥스의 벤처기업신주(공모주 및 CB, BW 등 벤처기업신주로 인정되는 주식관련사채 포함)에 펀드 자산의 15% 수준으로 투자
- 하나증권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코넥스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 선별 투자
-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밸런싱 수행

(2)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 KOSDAQ150 선물 등

- 장내 매입한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의 50% 수준으로 코스닥150 선물을 매도하여 코스닥 주식 노출도 관리

(3) 채권에의 투자

- 채권에의 투자는 적극적인 수익창출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단기채 위주로 운용
- 이자율 리스크 및 개별 채권의 신용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략 및 투자 대상 선정

	* 비교지수(Benchmark) : KOSDAQ 지수 * 5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 * 45% -KOSDAQ150 지수 *2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벤처기업 관련 코스닥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안정성을 위해 국내 채권을 함께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DAQ 지수 * 5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 * 45% -KOSDAQ150 지수 *2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위험관리]**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2025년 04월 04일 기준)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295	0.600	0.94	1.301	232	371	516	829	1,7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695	1.000	1.31	1.701	174	357	550	963	2,19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995	0.300	0.61	1.001	152	259	372	614	1,3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195	0.500	1.01	1.201	123	252	388	680	1,548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을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기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 [약3년]**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2025년 04월 04일 기준)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4/04/05 ~ 2025/04/04	2023/04/05 ~ 2025/04/04	2022/04/05 ~ 2025/04/04	2020/04/05 ~ 2025/04/04	(%)
펀드ClassA	2018-04-05	-8.29	-2.16	-3.29	11.08	5.72
비교지수	2018-04-05	-6.37	-2.84	-2.84	2.61	0.61
수익률 변동성(%)	2018-04-05	11.77	12.39	12.40	14.09	13.40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 55% + 매경BP국공채 1년지수 * 45% -KOSDAQ150 지수 *20%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2025년 05월 16일 기준)

인력

[주식운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파생형_국내,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황은미	1984	부장	9	903	-	-	-3.01	1.96	14.5년
부책임	문예지	1987	차장	9	367	-	-	-3.01	1.96	6.9년

[채권운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파생형_국내,%)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정재민	1975	이사	86	168,128	-3.01	1.96	-3.01	1.96	23.5년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주식(신주 및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 및 공모주, 상장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주식(신주 및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 및 공모주, 상장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련사채 등) 및 코스닥 공모주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으므로 유동성 및 시장,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스닥 공모주 등은 코스피 시장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본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넥스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를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관련사채 등) 및 코넥스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 받으므로 투자관련 정보 확인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재무상황 및 경영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므로 유동성 및 시장,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코넥스 공모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비해 변동성은 매우 높은 반면 유동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본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등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해당 증권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며, 또한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나 장래성은 있지만 재무상황, 경영자의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등 경영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유동성 및 시장, 신용위험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주식(신주 및 상장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포함) 및 주식관련사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이 부족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대량환매 시 기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으나, 공모주(신규로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상장주식 보다 가격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물량으로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유리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 세제혜택 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제혜택 관련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설정 또는 환매 등의 사유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예기간

<table>
<tr><td></td><td colspan="3"><table><tr><td></td><td>이후에도 비율 충족을 못할 경우 소득공제등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소규모 펀드), 소규모펀드 처리 방안(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등)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td></tr></table>※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 rowspan="2">환매
방법</td><td rowspan="2">·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td></tr>
<tr><td>과세</td><td colspan="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구분</th><th>세부 내용</th></tr>
<tr><td>근거</td><td>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td></tr>
<tr><td>계약기간</td><td>3년 이상</td></tr>
<tr><td>세제혜택</td><td>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td></tr>
<tr><td>소득공제
방법</td><td>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td></tr>
<tr><td>감면세액
추징</td><td>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 받음. 다만, 다음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td></tr>
</tabl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소규모 펀드), 소규모펀드 처리 방안(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등)에 따라 상기의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조좌(1좌단위 모집)</td></tr>
<tr><td>**효력발생(예정)일**</td><td>2025년 05월 30일 | **존속 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 이상</td></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td></tr>
</table>
</td></tr>
</table>

		(S)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가입 전용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